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1. 201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쿼터는 57천명으로 결정

* 기업의 수요를 반영, E-9쿼터(57천명) 중 11천명을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 등으로 입국하는 성실 숙련 재입국 취업자에 배정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

< 2012년 도입규모(E-9) >

구 분	합 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	57,000	49,000	4,500	1,750	1,600	150

○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303천명으로 결정

* H-2는 원칙적으로 업종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쿼터를 별도 배분하지 않음

2. 시기별 배정

○ 외국인력을 반기별로 배정하되, 기업의 수요 및 재입국자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60% 이상을 배정

- 총 쿼터 내에서 별도 관리되는 재입국 숙련인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 '09.5월부터 시행 중인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2012년도 건설업 취업동포의 규모는 55천명으로 결정
 - * 건설업 취업등록제 : 매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 등을 거친 동포만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사업장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분야에는 신규인력 배정한도를 설정 운영
-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제조업 및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대하여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각각 상향
 -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12년 1월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공고

4.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 2012년도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는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월 10일부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발급
 - * 상반기 쿼터 개시일 :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1.10, (제조업) 1.12, (어업) 1.26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12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에 한함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1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 여관업(55112) - 일반음식점업(5611) - 기타 음식적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좌 동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소금채취업(07220)	좌 동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좌 동

'12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용 한도)

□ 제 조 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인 이상 10인 이하	5인 이하	2명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4명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5명 이하
201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획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건 설 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 공사금액 1억원 당 0.4명을 고용할 수 있음(소수점 이하는 내림)

※ 건설업의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없음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인 이하	2인 이하	2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 개인 간병인, 가구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인시 특례외국인근로자를 4인까지 고용가능

※ 서비스업 중 '관광호텔업'도 상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한도까지 고용가능

□ 농축산업

업 종		규 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 · 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이상	
	콩나물 · 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이상	
	기타원예 · 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이상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이상	
	말 · 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이내	8명 이내	1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3인 이내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정치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1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 양식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허용인원	3명 이내	5명 이내	7명 이내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이내	2명 이내	3명 이내
수산업법 제8조제1항 2호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제8조제1항 3~5, 7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3호 (종묘생산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1호 (양식어업)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소금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 등 ‘성실·숙련 재입국자 우대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 인력 쿼터에 포함됨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